



# [2025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2025.11.05.)

전국 교수노동조합 대덕대지회장 정기철 올림

1. 소급입법금지원칙(헌법 제 13조 제 2항) 위반 : 새로운 세칙은 앞서 발생한 행위(기존 의장직 수행)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 즉, “지금 만든 세칙”으로 “이미 선출되어 재직 중인 의장”을 해임하는 것은 무효이다. 향후 새로 임명될 의장에에만 적용될수 있는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 한계 위반: 시행세칙은 상위 규정(운영규정 및 정관)에 근거해야 하는데, 상위 규정에 “의장 해임” 조항 자체가 없다면, 세칙으로 그런 권한을 새로 만드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행위이다. 이는 행정법상 “무효인 내부규정 제정행위”로 간주된다.

알려진 바와 같이, 11월 6일 '대학 평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을 안건으로 하는 평의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 1. 고소 사실 고지

먼저, 평의위원회 교원평의위원회 의장 해임과 관련하여, 총장 및 일부 교무위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었음(고소일 : 2025년 9월 25일)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총장 및 일부 교무위원들이 정당한 의장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2. 11월 6일 안건의 법적 위험성

이번 운영세칙 제정(안)이 만일 현재 재직 중인 의장의 지위에 소급 적용되거나, 상위 규정(정관 등)에 근거 없이 해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소급입법금지원칙(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이미 선출되어 재직 중인 의장에게 새로운 세칙을 소급 적용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유보원칙 및 위임 한계 위반: 상위 규정에 의장 해임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하위 세칙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3. 평의원님들께 드리는 간곡한 요청

평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법적 쟁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만일 위와 같은 위법 소지가 있는 안건이 논의될 경우, 해당 의결 과정에 참여하거나 동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추후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경우, 위법한 세칙 제정 및 집행에 관여한 분들에게는 업무방해 또는 직권남용 등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평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으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는 2025.11.06.(목) 10:00 개최 예정이었으나 참석 예정이었던 의원 1인이 2025.11.03.(월)에 간사에게 불참 의사를 밝혀 성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최일시 후보였던 2025.11.05.(수) 16:00로 정정되었음을 밝힙니다. (대학평의위원회 간사)

(배석 김호겸) 2024년은 본교가 2025년부터 재정지원사업인 RISE 사업과 혁신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Vision 2030) 재수립(안)을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총 4차례에 걸쳐 前 의장님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드렸으나 자격 미달인 기획처장이 보낸 협조문에 소집을 못 하겠다며 소집을 거부하였습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Vision2030) 재수립(안)은 대학 운영이나 사업의 추진 방향과 연계로 계획서의 핵심이기에 사업 신청 및 선정에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5차 소집요청에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2025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자문도 함께 요청드렸는데 결국 중장기 발전계획은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자문안건만 상정하는 선별적 상정으로 대학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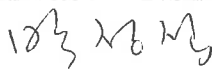
이에 대학은 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해촉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 2024학년도 제17차 교무위원회에서 대학평의위원회 교원 평의원 해촉(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무위원회에서는 前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이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 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안건을 선별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평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에도 반하며, 대학평의위원회의 정상적인 기능에 어긋나는 직무유기 및 의무태도 보아 참석 교무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대학평의위원회 교원평의원 해촉(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학평의위원회가 소집되어 성원을 충족하였고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참석위원들의 호선으로 한건환 의원님께서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現 의장님의 주재하에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안건들 중 일부는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前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은 2024학년도 제17차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교무위원들을 상대로 대전유성경찰서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은 충분히 수사 협조할 의향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 증빙자료도 제출할 계획도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그 판단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의원 이우준) 평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아셨으면 합니다. 대학평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2025학년도 대덕대학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11.17.(월) 이전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교직원 11월 급여는 체납됩니다. 이는 임금 체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지금 의장님께서 前 대학평의위원회 의장님이 해촉되기 전부터 외부평의원으로서 자리 해주신 분으로, 의장으로 호선된 후 대학평의위원회가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평의위원회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성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 비정상적으로 운

의원 

의원 

의원 

# [2025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2025.11.05.)

영이 되었습니다.

- (의원 맹정래) 말씀하신 여러 사안들을 감안하여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대학평의위원회가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한건환) 지금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한다더라도 前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해촉 관련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를 위해 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의원 박정섭)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안승권) \*\*\*교육부에서 보낸 공문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 학교 측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의결도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부 공문 전문] 제목: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해촉 관련 시정 명령

1. 관련

- 가. 고등직업교육정책과-1962(2025.3.24.), 2140(2025.4.1.), 2152(2025.4.2.), 2898(2025.4.30.), 3063(2025.5.8.), 3579(2025.5.28.), 4693(2025.7.15.), 5496(2025.8.12.)
- 나. 대덕대학교기획예산팀-25(2025.4.4.), 46(2025.4.8.), 295(2025.5.19.), 388(2025.6.5.), 665(2025.7.23.), 950(2025.9.19.)
- 다.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제70조(보고 조사 등)
- 라.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 감독),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2. 대학평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기구로서,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대학평의위원회 평의원을 해촉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해촉 절차 및 사유의 명확한 근거에 따라, 적절한 조사 절차를 거쳐 해촉 권한을 가진 기구의 심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3. 이에 우리 부는 귀 대학의 해당 대학평의원 해촉 건에 대해 지난 8. 12. (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귀 대학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귀 대학이 9. 19.(금) 자료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 및 권한 있는 기구에 의한 해촉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이에 우리 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귀 대학의 대학평의위원회 평의원 해촉이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오니,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증빙자료와 함께 2025. 11. 7.(금)까지 우리 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기한 내에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현지 조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배석 김호겸)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세칙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의 하위 규정으로서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상위 규정인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의 내용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해촉과 관련하여 명확한 내용이 미비되어 있어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이나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세칙의 제정 등을 통해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장 한건환)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여부가 결정되면 제정(안)을 두고 오늘 미참석한 의원님들과도 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배석 김호겸) 교육부에서 제시한 시정 기한이 2025.11.07.(금)까지입니다. 해촉 과정을 지켜보신 의원님들께서도 해촉 사유가 정당했다는 의견을 나누었음을 교육부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우준) 학교 정문 앞 현수막을 보셨듯이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올렸던 2025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했던 것을 거부하여 열흘 뒤 있을 11월 급여 지급 예정일에 임금체불될 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前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해촉과 관련하여 실제 해촉에 관해 여러 가지 상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공감해 주신 여기 계신 과거에도 평의위원회 의원님들끼리 의견 수렴과 상황을 대학에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박정섭) 최근 대학평의위원회를 거친 안건 중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것이 있었습니까?

(배석 김호겸) 네, 일부 있습니다.

(의원 안승권) 그 당시 대학평의위원회 안건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Vision2030)이 없어서 그것을 반드시 보완해야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다고 제가 의견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보낼 때, 前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 도대체 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없느냐, 그게 있어야 예산 책정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대학평의위원회를 줄속으로 종결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녹음 부탁드린다고도 했었습니다. 前 대학평의위원회 의장님께서 해촉이 된 후, 다음 평의위원회 의장을 호선하게 될 차례에 절차상 문제없이 된 것인지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의원  의원  의원 

# [2025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2025.11.05.)

(의원 이우준) 네, 기억이 납니다.

(의원 박정섭) 前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해촉은 교무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절차상 문제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당시 평의위원회 의원으로서 새로운 평의위원회 의장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순서대로 답변서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교육부에서 보낸 시정 명령 공문에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오니' 라고 쓰여 있으니,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기획처장님께서 준비하셔서 오늘 방향성이라도 신속히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배석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의원 이우준) 지금 나누신 말씀에 상당한 공감을 표합니다. 교육부에 전달할 답변서와 오늘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잘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조교 평의원님과 학생 평의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학교의 상황을 알고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한건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학평의위원회 해촉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니 이와 관련된 걸 시정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이 사안들을 학교 측에서 교육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회의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시정 뒤 그렇게 보고하고 나중에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이 나오면 심의 통과하는 절차까지 답변 계획서에 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 박정섭) 조교 평의원님이나 학생 평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의원 김유빈) 솔직히 학생으로서는 그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 맹정래) 저는 2025학년도부터 대학평의위원회 직원 평의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모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평의위원회는 문제가 없는 기구로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님들 모두 같은 의견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승권) 前 대학평의위원회 의장님께서 해촉이 된 이후인 2025학년도 대학평의위원회부터 지속적으로 미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인데 자주 불참하셨다는 사실 또한 기록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세칙이 제정 및 시행이 되어 보완이 된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드리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의원 안승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보는데, 이사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미참석할 때에는 교육부를 통해 관선 인사가 되는 절차가 있습니까?

(배석 김호겸) 최후에는 그럴 수가 있으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그저 하루빨리 이사회가 정상화돼서 주요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바랄 따름입니다. 앞서 이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당장 교직원 11월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 안승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의원 이우준) 위원회에는 보고 사항과 의결 사항이 있는데 이걸 그저 촉구하는 의견입니다. 대학평의위원회에 외부 의원님, 교원 평의원님, 직원 평의원님, 조교 평의원님, 학생 평의원님 모두 계시니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학교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대학 평의원으로 활동한 사항이 있는데 평의위원회 의장 해촉을 위촉한 기구에서 해촉을 하였으며, 이상 없이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의 해촉 기구에 대해서 해촉 권한이 없는 기구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가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교육부에서 보낸 내용을 빌미로 현재까지 성원시키지 않고 해태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절차적인 하차라고 표현하여 일부 이사들은 대학평의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은 과거에도 수십 차례 이사회에 불참하고 있고 지금은 그저 정쟁의 도구로서 대학평의위원회를 불모로 삼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안건 의결 촉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한건환) 제가 교육부 공문을 계속 읽어보니 해촉하는 법령이 없어서 문제니 해당 법령을 시정하여 올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한데, 前 대학평의위원회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급입법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교육부에서는 적절한 절차나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교육부 행정 사무관님의 소임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 이우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세칙(안)이 마련되면 관련하여 교육부에 답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맹정래) 예, 그런데 기한이 2025.11.07.(금)까지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기획처에서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석 김호겸) 일단 기획처에서는 금일 대학평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의원님들 간 어떠한 의견이 있었으며, 대학이 검토하고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및 방향을 토대로 답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의원 안승권)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있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되어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배석 김호겸)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건환)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2025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위원회 의안번호 2025-7-1호, 2025-7-2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 김호겸) 답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이 오면 추후 보고안건으로 제가 직접 배석해서라도 설명을 해드

의원 *한건환*

의원 *맹정래*

의원 *이우준*

[2025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5.11.05.)

일 기회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라. 기타안건**

(의장 한건환) 기타안건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 임원 선임(안)”입니다.

의장 한건환, 부의장 박정섭, 직원의원 이우준으로 진행하는 것 어떠십니까?

(전체 의 원) 동의합니다.

**마. 폐회선언**

(의장 한건환) 2025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타

- 붙임 1. 2025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 참석 현황 1부.  
2. 대학평의원회 외부 평의원 수당 지급 계좌 및 참석 확인 각 1부.  
3. 관련문서 1부. 끝.

의원 

의원 

의원 